

1. 개정이유

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 의무 신설 등 내용의 「실내 공기질 관리법」이 개정(‘27.1.8 시행)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
2. 주요내용

가.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제출 방법 규정(안 제11조제6항)

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 정보망에 입력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6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실내공기질의 측정) ① ~ ⑤ (생략) ⑥ <u>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.</u> 이 경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·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	제11조(실내공기질의 측정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<u>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</u>